

## 「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」 주요내용

(배경)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복합위기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경영안정 및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 실시 필요

(목표) 경영 위기에 처한 수출입기업에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여 신속한 피해극복 및 대외경쟁력 확보

### 가 관세조사 유예

- [목적] 중소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일시적으로 유예·연기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
- [대상] 세정지원 대상 중 수입실적이 1억불 미만('22년도 기준)으로 아래 제외요건 미해당 업체

구 분	제 외 요 건
업 체	① 최근 4년간 관세법칙(통고처분 포함) 발생 기업 ② 최근 2년간 관세 체납실적 있는 기업(발생 30일 내 납부 시 제외) ③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자 명단에 등록된 업체 ④ 탈세혐의가 명백한 기업 ⑤ 일제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⑥ 세정지원 대상 기업 중 ①-③ 해당기업
물 품	⑦ 수입신고 물품이 「관세법」 시행규칙 제8조(사전세액심사 대상)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

- [내용]
  - (조사유예) 지원대상 선정기업에 대해 '23. 7. 1. ~ '24. 6. 30. 1년 간 관세조사 유예
  - (조사연기·중지) 관세조사 통지 또는 진행 중인 업체 중 “⑥ 피해 기업”으로 접수·확인된 경우 관세조사 착수 연기 또는 일정기간 관세조사 중지

- [절 차] 본청(기업심사과)에서 조사유예 등 검토 후 결정

조사유예	본청에서 조사유예 대상 선정
조사연기(중지)	피해기업 확인(세관) → 확인명단 보고(세관·본청) → 조사연기(중지) 결정(본청)

## 나 납기연장 · 분할납부 · 담보 생략

- [목 적] 외국물품 수입 시 납부해야 할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 연장(분납허용)으로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지원
- [대 상] 세정지원 대상 기업으로 제외요건 미해당 업체

구분	제 외 요 건	
업체	납기 연장 (분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최근 2년간 관세법칙(통고처분 포함) 발생 기업</li> <li>• 최근 2년간 관세 체납실적 있는 기업(발생 30일내 납부시 제외)</li> <li>•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기업</li> </ul>
	담보 생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 고시」 제3조①항 해당 기업</li> </ul>
물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관세법」 시행규칙 제8조 (사전세액심사 대상) 제5호 해당 물품</li> </ul>	

- [내 용] 납부기한 연장(분납 허용) 및 담보제공 생략

- ① 수입통관 시 납부세액과 고액(5천만원 이상)의 세액정정 · 과태료(과징금) 납부액에 대해 납기연장(분할납부) 허용

구분	납부기한 연장	분할납부
• 수입통관 시 납부세액	최대 1년	최대 6회
• 사후 세액정정 납부세액 (보정, 수정신고, 경정)	최대 1년	최대 6회
• 과태료, 과징금 납부액	최대 1년	최대 6회(과징금 3회)

- ② 납기연장(분할납부) 업체에 대해 담보제공 생략

- [절 차] 납기연장 · 분할납부 신청\* 및 사후관리(취소 등)는 「관세법시행령」 제2조③항부터 제⑦항에 따라 처리

## 참고

## 납기연장(분할납부) 인정 기준

지원대상	인정 기준	확인
①~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~⑤ 해당 기업 (①-③ 제외)</li> </ul>	본청시달 명단 확인
①-③ 수출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직접수출, 간접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 제조기업</li> </ul>	직접수출: 관세청자료 간접수출: 구매승인서, 내국신용장 등 수출갈음 서류
⑥ 피 해 기 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천재지변, 감염병, 화재, 지진, 홍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재해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관세의 납부가 심히 곤란한 때</li> </ul>	피해사실 입증 서류 (사진 포함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근 3개월간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 금액 대비 20%이상 급증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</li> </ul>	관련 재무제표 등 입증 서류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%를 초과하는 거액의 대손금 발생, 매출채권의 회수 곤란 등의 사유로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</li> </ul>	관련 재무제표 등 입증 서류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근 3개월간 매출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20% 이상 감소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</li> </ul>	관련 재무제표 등 입증 서류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제 물류대란으로 선박(항공기)의 선(기)복 확보 애로 등으로 선적지연, 수입통관 지연 등 기업 피해가 발생한 때</li> </ul>	선적 지연 등 피해사실 입증 서류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급망 위기에 따른 원재료 수급 불안,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등으로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</li> </ul>	피해사실 입증 서류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자금경색이 심각하여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경영활동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때</li> </ul>	피해사실 입증 서류
	⑦ 사회 적 기 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근2년 누적 수입실적 1억이하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해당 기업</li> </ul>
⑧위기산업 재난지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개성공단 입주기업</li> <li>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소재 기업</li> <li>기타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</li> </ul>	본청시달 명단확인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업장 주소확인 서류

## 다 수출환급 지원

□ [목 적] 인력·정보부족 등으로 수출환급을 활용하지 못하는  
중소 수출기업 등에 환급정보 및 절차 간소화 서비스 제공

□ [대 상]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간이정액환급 대상 업체

구 분	요 건
업 체	①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해당 중소기업 ②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실적 6억 원 이하 ③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~환급신청일 환급실적 6억 원 이하
물 품	① 국내 제조·수출물품 ②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물품

□ [내 용] 신생 수출중소기업, 수출실적은 있으나 환급실적은 없는  
업체를 중심으로 未환급업체를 발굴하고 환급신청 방법 등 안내

- (환급 안내) 수출신고 시 최근 2년간 환급 여부를 조회하여,  
수출업체(또는 관세사)에게 환급정보를 실시간 자동 안내
- (신속 지급) 중소기업의 환급신청 시 환급 결정 당일  
환급금을 先지급 하고 後심사(부득이한 경우 제외) 실시
- (절차 간소화) 별도 환급신청 절차없이 수출신고서에  
자동환급 표시하면 환급 신청한 것으로 간주
- (품목 확대) 소요량 계산없이 간단한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 
있는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\* 확대('23년, 신규 10개)

\* ('20) 4,496개 → ('21) 4,513개 → ('22) 4,520개 → ('23) 4,530개

□ [절 차] 「환급특례법」 및 「수출용원재료 관세등 환급사무처리  
관한 고시」에 따라 업무 처리

## 라 수입부가세 납부유예

□ [목 적] 외국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수입부가가치세의 납부를 통관 후 정산 시까지 유예하여 자금 부담 완화

□ [대 상]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

수출 규모	• 수출액 비중 30%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중소기업
요건	① 최근 2년간 관세·국세 체납(15일 이내 체납세액 납부 시 제외) 없음 * 단기체납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 완화 ② 최근 3년간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실 없음 ③ 최근 3년간 계속 사업 경영 ④ 최근 2년간 납부유예 취소 사실 없음

□ [내 용]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승인일로부터 1년간 유예하여 자금부담 완화 지원

□ [절차] 「부가가치세법」 시행령 제91조의2와 「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 납부유예 운영 지침」에 따라 업무 처리

### 【수입물품 부가세 납부유예 신청 및 승인 절차】

①요건충족 확인요청(업체→세무서장) ⇨ ②확인서 발급(세무서장→업체)  
 ⇨ ③납부유예 적용신청(업체→세관장) ⇨ ④승인여부\* 결정(1개월 내, 세관장)  
 \* 관세법 위반(3년), 체납사실(2년), 납부유예취소(2년) 여부 확인